

# 정관

(주) 유수홀딩스

# 정 관

## 제 1 장 총 칙

제 1 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유수홀딩스라 말한다.

영문으로는 EUSU HOLDINGS CO., LTD.로 표기한다.

제 2 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2. 해운업
3. 항만용역업
4. 창고업
5. 부동산 임대업
6. 조선 및 수리업
7. 선박 매매업 및 용대선 사업
8. 항만운영개발 및 항만하역업
9. 종합물류업
10. 소프트웨어사업, 정보통신사업, 정보통신서비스업 및 부가통신사업관련 개발, 판매 용역, 임대, 설치, 유지보수업무 및 대리점업
11. 장비(컨테이너, 샷시) 제조업, 매매업 및 대여업
12. 신재생에너지, 환경에너지 사업
13. 자원 개발 사업
14. 영농사업
15. 인력파견업

16.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 판매 및 설비, 전산시스템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17. 정보처리 내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조사용역, 생산, 판매, 유통, 컨설팅, 교육, 수출사업 및 이에 필요한 소재, 기기 설비의 제공 사업
18. 기술연구 및 개발과 기술정보의 제공 및 용역수탁업
19.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20.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21.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22. 음식점업 및 프랜차이즈 사업
23. 전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부대사업

제 3 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국내외에 지점을 둘 수 있다.

제 4 조(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usu-holdings.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 2 장 주 식

### 제 5 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억 5천만주로 한다.

### 제 6 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이천오백원으로 한다.

### 제 7 조(주식의 종류)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 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제 7 조의 2(주식의 수와 내용①)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1,500만주로 한다. 단, 종류주식의 수는 발행한 보통주식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이상으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⑦ 종류주식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하되 그 기간은 이사회가 정하며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개정 2021.3.30)
- ⑧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 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2. 전환할 수 있는 기간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4. 종류주식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할 수 있다.
    - 가. 회사의 재무적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회사의 경영상 필요,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

다.종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종류주식의  
전환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 7 조의 3(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②)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1,500 만주로 한다. 단 종류주식의 수는 발행한  
보통주식의 4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이상으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⑦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의해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내 또는 상환청구기간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5.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 8 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개정 2019.9.16)

#### 제 9 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소정의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또는 지주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의 자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또는 자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이 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어 자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당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⑦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⑧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9 조의 2 삭제(2019.3.27)

제 9 조의 3(주식매수선택권)

- ① 이 회사는 임직원 또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 340 조의 2, 제 542 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 30 조의 각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 발전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또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해당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5 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 34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주요주주(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3. 상법 제 340 조의 2 제 2 항 각호에 규정된 자.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 7 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 또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할 수 없고, 임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명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 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 10 조(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개정 2021.3.30)

#### 제 11 조(명의개서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개정 2019.9.16)

-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3.30)

제 12 조(주주명부 작성·비치) (신설 2021.3.30)

-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3 조(기준일)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 제 3 장 사 채

### 제 14 조(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제 14 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9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9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 1 항 제 2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개정 2021.3.30)

제 15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9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9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 1 항 제 2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범위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삭제(2021.3.30)



제 15 조의 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9.16)

제 16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사채의 발행과 관련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는 경우에는 제 11 조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9.6)

## 제 4 장 주주총회

### 제 17 조(총회의 종류와 소집시기)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제 13 조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일로부터 3 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21.3.30)

### 제 18 조(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의 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 34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9 조(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 경제 신문에 각각 2 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제 20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그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 21 조(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 34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2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과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3 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일주마다 일개로 한다.

제 24 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이 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5 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6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임장으로 타출석주주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7 조의 2(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 2 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 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는 원본을 지점에는 사본을 비치한다.

## 제 5 장 이사, 이사회

### 제 29 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 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 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 30 조(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수로서 선임한다.
- ③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정하는 집중투표의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31 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 년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종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제 32 조(이사의 보선)

-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해 법정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33 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34 조(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4 조의 2(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4 조의 3(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 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 397 조(경업금지),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5 조(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되, 법령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한 이외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7 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6 조(이사회 의 의장)

이사회 의 의장은 이사 중 1 인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의장 의 유고시 에는 제 34 조 제 2 항을 준용한다.

제 37 조(이사회 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 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 의 출석 과 출석 이사 의 과반수 로 한 다. 다만, 상법 제 397 조 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 조(자기 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 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 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 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 고 모든 이사 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 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38 조(이사회 의 의사록)

- ① 이사회 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이사 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9 조(위원회)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 다.
- ② 각 위원회 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5 조, 제 37 조, 제 38 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0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규정에 의한다.

제 41 조(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 41 조의 2(감사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1.3.30)

-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위원 중 1 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제 3 항 후문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시에는 이 항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하고, 제 30 조 제 2 항을 추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 ⑤ 감사위원회위원은 상법 제 434 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3 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⑥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 41 조의 3(감사위원회의 직무)

-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 2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6 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제 41 조의 4(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7 장 제 산

#### 제 42 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43 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제출)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 1 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 1 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 ⑤ 제 4 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4 조(재무제표 등의 비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1 주간 전부터 제 43 조 제 1 항에 규정한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 45 조(재무제표 등의 승인, 공고)

대표이사는 제 43 조 제 1 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 43 조 제 4 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5 조의 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46 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6 조의 2(주식의 소각)

- ① 주식은 관계법령상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소각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각할 수 있다.

제 47 조(이익의 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 1 항의 배당은 제 13 조 제 2 항에 따라 정해진 배당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3.30)

제 47 조의 2(분기배당)

-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 월, 6 월 및 9 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2 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 1 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 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2. 직전결산기까지의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상법시행법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 4. 직전결산기까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 삭제(2021.3.30)

제 48 조(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지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 부 칙

###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50. 1. 1	
개정	51.11.30	57.12.20
	60. 8.12	61. 2.24
	61. 8.28	62. 3.17
	63. 8.24	64. 1.12
	64. 3.26	65. 2.25
	67. 2.24	68.11.11
	71. 2.24	74. 2.26
	74. 7.12	75. 2.26
	77. 2.24	78. 2.24
	79. 2.26	79. 2.26
	80. 2.27	84. 2.28
	85. 2.27	86. 2.28
	87.11. 8	88. 3. 7
	88.11.30	89. 2.27
	90. 2.26	91. 2.28
	92. 2.28	93. 3. 5
	95. 2.28	96. 3. 8
	97. 2.28	98. 3.27
	99. 3.19	2000. 3.17
	2001. 3.16	2001. 4. 1
	2002. 3.15	2004. 3.19
	2008. 3.21	2009. 3.20
	2009.12. 1	2011. 3.18
	2012. 3.16	2014.11. 4
	2019. 3.27	2021. 3.30